

 <p>거창군 Geochang County</p> <p>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</p>	<h1 style="font-size: 4em;">공 보</h1> <p>제828호 2021. 10. 27(수)</p>	
---	---	---

선 결	기관의 장

고 시

- 제2021-147호 거창군관리계획(교통시설 도로, 주차장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2
 제2021-150호 도로명주소 고시 4

공 고

- 제2021-15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거창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
 및 계획) 결정(변경) 공람·공고 6
 제2021-1508호 「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 입법예고 9

회 략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

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●거창군 고시 제2021-147호

거창군관리계획(교통시설: 도로, 주차장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-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88-1번지 일원에 거창군 고시 제2014-105호(2014.09.16.), 제2014-116호(2014.10.14.) 결정된 대산지구농촌테마공원 내 군계획시설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창군관리계획(교통시설: 도로, 주차장) 결정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합니다.
- 관계 도서[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]에서 열람가능)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1년 10월 21일

거창군수

1. 거창군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 조서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결정(경미한 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292	8	집산 도로	447	남상면 월평리 2366	남상면 월평리 2280	일반 도로	거창 창포원	거고105호 ('14.9.18)	
변경	소로	2	292	8	집산 도로	447	남상면 월평리 2366	남상면 월평리 2280	일반 도로	거창 창포원	거고105호 ('14.9.18)	편입면적 산정착오

■ 도로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2-292	소로2-29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로면적 변경: 도로결정 도면과 편입 토지조서의 면적산정 착오 - 기정: 4,710.6㎡→변경: 4,278.8㎡ (감431.8㎡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입토지 면적산정 착오(면적: 감431.8㎡) ① 미분할 토지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(면적: 감5.5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남상면 월평리 2288-1⇒(분할: 2288-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2288-2 : 35.7㎡→31.3㎡(감4.4㎡) · 남상면 월평리 2298 : 50.0㎡→49.6㎡(감0.4㎡) · 남상면 월평리 2366-4: 3.0㎡→ 3.4㎡(증0.4㎡) · 남상면 월평리 2368 : 45.0㎡→43.9㎡(감1.1㎡) ② 미편입 토지 삭제(면적: 감426.3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남상면 월평리 2367 : 426.3㎡→0.0㎡(감426.3㎡)

2) 주차장결정(경미한 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9	창포원 주차장	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88-1번지 일원	17,436.3	4.4	17,440.7	거고116호 ('14.10.14)	

■ 주차장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9	창포원 주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입토지 면적산정 착오 정정 - 지번: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88-1번지 일원 - 면적: 17,436.3m² → 17,440.7m²(증4.4m²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분할 토지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· 남상면 월평리 2288-1 : 8,204.0m²→8,208.4m²(증4.4m²)

2. 관계도면: 게재생략(토지이음 고시정보에서 확인가능)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10. 27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고시대상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273-82 등 9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(부여.변경.폐지) 고시 조서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	이동사유	비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		
1	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507-1	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273-82	20211027	20091228	행정구역 웅양을 이용하여 웅양로로 명명	건물번호 부여	
2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 735-2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빼제로 423-1	20211027	20091228	고제면에 위치한 빼제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	건물번호 부여	
3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407-2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어인길 975-71	20211027	20090401	어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건물번호 부여	
4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634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원남산3길 48	20211027	20180807	남산마을 명칭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	건물번호 부여	
5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60-3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8-12	20211027	20090401	마을 남서 뒷산이 말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	건물번호 부여	
6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860-2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907	20211027	20091228	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	건물번호 부여	
7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860-2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905	20211027	20091228	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	건물번호 부여	
8	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66	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아주1길 405-12	20211027	20090401	고려말 거제현의 속현인 아주현에서 마을이름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	건물번호 부여	
9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산107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6길 197-70	20211027	20090401	행정구역명 도리가 반영된 여섯번째 도로	건물번호 부여	

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거창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공람·공고

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23번지 일원에 「주택법」 제1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거창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. 10. 27.

거 창 군 수

1.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조서

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A	가지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거창읍 가지리 1323번지 일원	-	증)26,130	26,130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변경내용	결정사유
A	가지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· 신설 - 26,130㎡	· 가지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,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·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코자 함

2)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

구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-	증) 26,130	26,130	100.0	
공동주택용지	-	증) 23,132	23,132	88.5	
도로용지	-	증) 2,998	2,998	11.5	

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1) 도로

가)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신설	소로	2	A	8	국지도로	367	소로 2-293	가지리 356-3	일반도로	-	-	

■ 도로 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소로 2-A호선	· 노선신설 (B=8m, L=367m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지리2지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원활한 진·출입을 위해 진입도로 신설

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I	1	23,132	거창읍 가지리 1323번지 일원	23,132	공동주택용지
I	2	2,998	거창읍 가지리 356-3번지 일원	2,998	도로용지

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번호 (가구번호)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I-1	거창읍 가지리 1323-9번지 일원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: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, 복리시설 불허용도 :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• 60% 이하
		용적률	• 250% 이하
		높 이	• 20층 이하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각적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가구의 형상을 감안하여, 각 동의 배치방향이 통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
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부마감 손상으로 미관저해가 없도록 하며, 모든 외벽은 전면에 준하도록 통일되게 처리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출입구,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함 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름 		
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물의 색채는 주변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선택하되 주조색, 보조색, 강조색 등의 색채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 		

5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번호	위 치	계 획내 용	비 고
-	거창읍 가지리 1323-9번지 일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로2-A호선 및 소로2-293호선변 차량출입 허용 구간 설정 차량출입 허용구간 외 차량출입 불허 	차량출입 허용구간 도면참조

2. 공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3. 공람장소 :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

4. 관련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: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며,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(열람장소에 비치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055-940-358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「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,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0월 25일

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2. 개정이유

거창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체험료를 현실화하여 거창군목재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체험료등 지원 추가(안 제16조)

나. 목공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조정(안 별표1)

4. 예고기간 : 2021. 10. 25.(월) ~ 11. 15.(월)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문화관광과 수송대담당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주소 : (우 50103)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거창수송대관광지관리센터
다. 전화 055-940-8532, 팩스 055-940-8549, 이메일 hancholy@korea.kr

라.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6. 기 타

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수송대담당
【☎(055)940-8532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

2. 「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조 례 명 :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생 년 월 일 :
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제16조(체험료등 지원) ① 군수는 거창군의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, 재료비, 강사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사(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) 및 학생
2. 마을이장(반장)
3. 기관·단체 임직원
4. 거창군에 거주하는 3세~13세 자녀를 둔 군민

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나무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6조(예산의 지원) ① 군수는 거창군의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, 재료비, 강사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사(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) 및 학생 2. 마을이장(반장) 3. 기관·단체 임직원 4. 거창군에 거주하는 3세~13세 자녀를 둔 군민 <p>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나무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.</p>

[별표 1]

목공 체험프로그램 체험료(제7조제2항 관련)

(단위: 원)

구 분	체험시간	체 험 료		비 고
		개 인	단 체 (20명 이상)	
대 품 (기계작업)	3시간 기준	3,000	2,000	※ 작품 1점당 체험료
중 품 (공구작업)	3시간 기준	2,000	1,500	
소 품 (단순작업)	3시간 기준	1,000	500	

1. 작품 1점당 체험시간 3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되, 기본시간 경과 시, 시간당 1,0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또한 소요시간 및 난이도에 따라 체험료를 최대 대품의 경우 최대 6,000원, 중품, 4,000원, 소품 2,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.
2.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특별프로그램 요청 시, 체험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.
3. 체험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.
4.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부과한다.
5. 이용객 중 인솔자(부모 포함)는 무료 입장할 수 있다.
6. 위 체험료는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며,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지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16조(목재문화진흥회) ① 목재문화의 진흥,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(이하 “진흥회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1.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·제도의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업
2.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
3.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
4.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
5.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·사업비·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진흥회의 조직,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8조(재정지원)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1.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·판매·유통·이용·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
2.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
3.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·개발
4.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